

증빙서류 제출

* 제출방법

온라인 지원신청서 1단계 이상 작성 후 'マイ페이지 – 장학신청 – 신청현황'에서 파일첨부로 제출함.

* 제출서류

1. 주민등록등본 1부 (세대주와의 관계 명시)

2. 경제상황증빙서류 : '법정저소득층' 또는 '기타 저소득층(차차상위 등)'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

*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출 서류에는 생년월일만 보이도록 함 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).

법정저소득층 : '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'에 해당하는 경우 * 아래 1~7 서류 중 1개의 서류만 제출

증명서	발급기관
1.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. 한부모가족 증명서 3. 자활근로자 확인서 4. 차상위계층 확인서 5. 사회보장급여 통지서(적합 또는 변경만 해당)	• 주민자치센터 • 시·군·구청 민원실
6.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	• 국민건강보험공단
7. 2019년도 교육비지원 대상자 확인서 * 2019년도 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지원에 따라 교육비지원을 받은 학생에 한하여 재단 서식을 출력하여 소속 학교장 직인 날인 후 제출	• 소속 학교

기타 저소득층 : '법정저소득층'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* 아래 1~3 서류 모두 제출

증명서	발급기관
1. 부모(보호자)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*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의 자격확인내역에 보호자, 학생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. *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음.	
2. 부모(보호자)의 2020년도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* 부모(보호자)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(보호자)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*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의 '증번호'와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의 '납부자번호'가 일치하여야 함.	• 국민건강보험공단
3. 부모(보호자) 모두의 2019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* 부모(보호자) 각각의 재산세(주택, 토지, 건물) 과세 정보(금액)가 표시된 서류를 제출함. * 과세 사실이 없는 경우, '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' 상에 '과세사실 없음'으로 기재되어 발급됨. * 납세증명서, 지방세 납세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.	과세 물건이 있는 지역의 • 주민자치센터 • 시·군·구청 민원실

▶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 원본만 인정합니다.

▶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관련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,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▶ 위에 제시된 서류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